신재생 국내이슈

국내외 기후공시 의무화에 따른 재생E 보급 확대 필요

●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24. 4.)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

□ 국내 지속가능 공시기준 초안*

- * 제1호 일반 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공시를 기준으로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24. 4.)
 - * 공시와 관련된 핵심 쟁점사항(도입 시점, 대상기업, Scope 3 공시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조회 기간을 거쳐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본이 확정될 예정
- (주요 내용)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Scope 1, 2,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tonnes of CO₂equivalent)으로 표시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글로벌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 >

- 29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산업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온실가스
 - (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tonnes of CO2 equivalent)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공시한다(문단 B19~B22 참조).
 - ① 스코프 1(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 ② 스코프 2(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 ③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 (나) 관할 당국 또는 자신이 상장된 거래소로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04)'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문단 B23~B25 참조).
 - ※ 출처: 국내 지속가능 공시기준 초안(한국회계기준원, 2024, 4, 30,)

< 온실가스 배출 범위 구분 >

구분		정의				
직접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간접 배 출	Scope 2	기업이 전기, 스팀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3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				

※ 출처: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3" 정의(엔라이튼, 2022. 11. 9.)

□ 글로벌 기후 공시기준

- **(국제)** '23. 6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 산하 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IFRS S2(기후 관련 공시) 내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
-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각 EU회원국은 CSRD 내용을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24. 7. 6.까지)에 자국 법률로 제정할 의무 부담
- (미국) '24.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상장 대기업/중견기업은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경우 공시 필요
 - * 허위 공시 판정 시. \$5백만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등 패널티 부여(미국 증권거래소법)

□ 기후공시와 재생에너지 관련성

- 정기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공개해야 하는 기후공시가 의무화될 경우,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곧 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의 수단이 됨
- 특히, 전력 사용에서 비롯된 Scope 2 배출량 감소를 위해 기업의 재생E 사용 및 조달이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 o 국내·외 공시에서 **GHG 프로토콜을 준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 RE100 이행수단^{*}으로 재생E 조달하는 경우도 감축 실적으로 공시 가능
 - * GHG 프로토콜「Scope 2 배출량 산정 가이던스」 시장기반 산정법에 기반한 이행 체계

□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 o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재생에너지 단가, 부족한 조달 옵션, 공급량 부족* 등을 문제로 꼽음
 - * 기업들의 재생E 공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자가설비 RE100 인증서 체계 및 PPA 중개시장 등 신규 정책 도입 추진 중
- o 기후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업별 재생E 사용 실적 확보 경쟁 심화로 조달 옵션(REC, PPA 등)의 단가 및 계약 가격 상승 요인 발생 가능

□ 시사점

- o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E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추진 필요
- o 재생E 조달이 어려운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재생E 조달 방안 외에도 다양한 조달 옵션을 발굴하여 재생E 공급 확대 필요

신재생 해외이슈

RE100 기업의 공급망 기업 대상 재생E 사용 요구 동향

◆ RE100 참여 주요 기업들은 탄소중립 및 ESG경영 등을 위해 전체 공급망 기업에 재생E 사용을 요구 중이며, 관련 기업들의 재생E 전환은 불가피할 전망

□ RE100 참여 기업별 재생E 사용 요구 현황

- o (배경) 기업별 ESG경영·기후공시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범위 (Scopel, 2, 3)*별 관리와 감축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 * Scope1 : 직접배출, 연료연소 및 공정가스, Scope2 : 간접배출, 전기 및 열 등 전환에너지 구매·사용, Scope3 : 기타 간접배출, 전후방 가치사슬 배출
 - 특히, '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예정으로 RE100 기업들은 비용 감소를 위해 Scope3까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 관내에 수출하는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 제도
 - 또한, 재생E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주요 RE100 기업들은 관련 공급망에 대해 재생E 사용 전환 요구 중

① 「Apple」

- o (현황) Scope1, 2는 탄소중립을 유지 중이며('20년~), 현재 Scope3의 배출량 저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된 모든 공급망의 재생E 전환 요구 중
 - * '30년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대해 탄소중립 목표 수립
 - (특이 사항) 사용 에너지의 효율성 개선 및 고품질 재생에너지원을 찾는 것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등을 배포하여 협력업체에 지원 중

② 「Microsoft」

- o (현황) 범위별 탄소배출량이 Scope1, 2는 6.3% 감소, Scope3는 29.1% 증가 ('20년 대비 '23년) 하였으므로, 관련 공급사에 재생E(100%) 사용 전환을 요구 중
 - * '30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 목표 수립
 - (특이 사항) 일부 대규모 공급업체에 대해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권고
 - * 1 기술개선, 2 효율성 증가, 3 파트너십 구축, 4 시장형성, 5 기후 관련 공공정책 옹호

③ 「Google」

- o (현황) Scope1, 2, 3의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소(50%) 및 남은 배출량에 대해 자연 기반 탄소제거기술* 투자를 통해 탄소저감을 이행할 예정이며,
 - * 자연 기반 탄소제거기술 : 산림 재생, 토양 관리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해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
 - '29년까지 전체 공급사에 재생E(100%) 사용 전환 목표 달성을 요구 중
 - * '30년 까지 모든 운영 부분 탄소중립 목표 수립
 - (특이 사항) 체계적인 변화를 위해 컨소시엄 등 여러 산업조직에 참여하여 더 정확한 모델링을 위한 주요 제조업 관련 데이터 수집 중

4 BMW

- o (현황) '50년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설정 후, 공급업체에 재생E(100%) 사용 전환 목표 달성을 요구 중
 - (특이 사항) 공급사 계약조건 내 녹색 전기(Green electricity) 사용,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조공정 보유기업 등을 명시하여 선정 기준 적용

□ 공급망에 재생E 사용을 요구한 기업별 RE100 이행 현황

<	기언볔	RE100	이행	혀 황	>
-	·		~ 1 0		_

기업	RE100 참여 연도(년)	RE100 달성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Apple	2016	100	100	100	100	
Microsoft	2015	100	100	100	100	
Google	2015	100	100	100	100	
BMW	2015	72	81	96	98	

[※] 출처: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CLIMATE GROUP RE100, 2024. 3. 6.)

□ 시사점

- o 기업별 관련 업체에 대해 재생E 사용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사는 재생E(100%) 전력 사용 전환 성공 시,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 확보 가능성 높음
 - 재생E(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및 PPA 계약 물량 확보 등 방안 모색 필요
- o 미국, EU 등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전환 추진 중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
 -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은 수출 대상 지역의 규제 및 지침 파악 필요

<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 ㅇ 국내이슈 <국내외 기후공시 의무화에 따른 재생E 보급 확대 필요>
 - ESG 공시의 의의와 쟁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한국금융연구원, 2024. 4. 5.)
 -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 및 정책 동향(법률신문, 2024, 5, 9.)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법률신문, 2024. 6. 1 0.)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한국회계기준원, 2024. 5. 1.)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3"정의(엔라이튼, 2022, 11, 9.)
- ㅇ 해외이슈 <RE100 기업의 공급망 기업 대상 재생E 사용 요구 동향>
 -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CLIMATE GROUP RE100, 2024. 3. 6.)
 - Read Apple's 2023 CDP Climate Change response(Apple, 2023)
 - Microsoft 2024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ort(Microsoft, 2024. 3.)
 - Google 2024 Environmental Report(Google, 2024. 7.)
 - BMW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BMW, 2022. 12.)